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9. 21 선고 2023가단503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2020. 6.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2020. 6. 5.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242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직원인 소외 C가 부적절하게 대출을 취급해 원고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020. 5. 6. 정기이사회에서 소외 C에 대한 변상처분 건을 논의하고, 2020. 6. 15.경 소외 C에게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취급 부적절에 따른 변상금으로 166,48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가합50326호로 변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9. 1. 소외 C는 원고에게 “166,4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C의 모로서 원고로부터 2016. 1. 23.경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C가 사용하게 하였는데(위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는 C가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20. 6. 5.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6. 5. 접수 제24270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2020. 6.경 C는 적극재산으로 유일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0. 6.경 위 부동산의 시세는 약 80,000,000원이었고, 소극재산으로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최고액 65,45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50,000,000원, 피고에 대한 3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C에 대한 변상금채권 및 이를 토대로 한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인 C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C에 대하여 실제로 금전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로서는 C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C에 대하여 실제로 금전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 중 1인에게만 채권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C는 모자지간인 점, 피고는 C에 대하여 2003년 내지 2016년경부터 피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사용하게 하여 C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채권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채권담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C에 대한 변상책임이 논의될 무렵인 2020. 6.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교

부동산의 표시

1. 1동건물의 표시 익산시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 적 제1층 호 49.8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익산시 대 33430.3㎡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3430.3분의 27.972

-- 이 상 --

